군산의 내일을, 탁월한 조망을 잘살 린, 기다 린, 우미 린

군산신역세권 우미 Lynn 센텀오션

다자녀 특별공급 구비서류 안내문

■ 당첨자 자격확인서류 제출방법

서류제출 기한	2021년 12월 31일(금) ~ 2022년 1월 6일(목) 16시 도착분까지 (반드시 지정된 기간내 서류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제출방법	견본주택 방문접수
수신처	군산시 미장동 511-3번지 우미린 모델하우스 (대표번호 : 063-732-9800)
유의사항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마스크 미착용자 및 체온 37.5도 이상 고객은 방문이 불가합니다. 기한 내에 아래 자격서류를 발급하시어 견본주택 방문 후, 부적격사항 및 적격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코로나19 거리두기 방역수칙이 강화됨에 따라 견본주택 방문은 방역패스를 소지한 당첨자 본인만 입장 가능합니다. (방역패스 미소지 고객은 별도문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격확인 제출서류

필수	서류유형 필수	서류유형 추가(해당자)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공통서류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		인감도장	본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서명
	○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		주민등록표등본(상세)	본인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 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본인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주소변동 사항 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상세"로 발급 - 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공급신청자와의 관계
	○		청약통장순위(가입) 확인서	본인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가입)내역 발급 또는 주택청약 서비스 청약Home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 순위(가입) 확인서 발급(단, 국가유공자, 장애인, 이주대책 대상자는 제외) 인터넷청약(청약Home)에서 청약 한 경우 생략
		○	출입국사실증명원(부양가족)	본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5항에 따라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입주자 모집 관련" 현재 거주지역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는 제외)
				부양가족	[직계존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 해외에 체류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만 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 만 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단신부임 입증서류	본인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해 세대원 중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체류(90일 초과)하고 있는경우 국내기업, 기관 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 : 파견 및 출장명령서 등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근로 관련 서류, 취업, 사업비자 발급내역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등본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가족관계증명서	직계존속	미혼, 이혼, 사별, 단독세대, 배우자 분리세대 등 배우자 유무 확인이 불가한 경우
		○	복무확인서	본인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 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시
다자녀 특별 공급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주민등록표상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3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3세대 구성 시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포함된 경우 본인의 등본상에 재혼 배우자의 전혼자녀가 등재되어 있을 경우
		○	주민등록표등본	자녀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재혼가정의 자녀일 경우 세대주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재혼가정의 자녀일 경우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경우에만 자녀로 인정)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 임신 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입양의 경우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또는 배우자)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지원법」 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만19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과 해당 시·도 거주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직계비속	만18세인 직계비속을 미혼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상세"로 발급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 사항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청약자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대리 신청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불가), '본인 발급분'에 한함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위임장	청약자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대리인 신분증, 인장	대리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2020년 12월 21일 이후 신규발급분은 제외)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2021.12.08(수))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모든 발급 서류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전체)등을 포함하여 발급하셔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 " 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 " 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 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 체결 시 주민등록표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 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 신청 시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서류 외 당첨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